

제 호

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

매도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			
매수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			
허가사항	불허가사유					
	대상권리			예정금액(원)		
	번호	소재지	지목		면적(m ²)	이용목적
			법정	현실		
정착물	종류	내용		예정금액(원)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지 아니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※ 유의사항

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